

경제 및 고용 동향

- ◆ 2011년 7월 생산 전년동월대비 2.7% 증가
- 2011년 7월 생산은 건설업(-13.2%) 부문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광공업(3.8%)과 서비스업(3.8%)의 생산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2.7% 증가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19.7%), 전기장비(-9.3%), 비금속광물(-11.2%) 등은 감소하였으나 반도체 및 부품(8.4%), 자동차(12.0%), 기계장비(6.7%) 등의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함.
 - 서비스업 생산은 부동산·임대(-3.4%), 하수·폐기물처리(-5.1%)에서는 감소하였으나 금융·보험(7.6%), 도매·소매(3.0%), 보건·사회복지(5.0%), 운수(4.2%) 등이 증가하여 전년동월대비 3.8% 증가함.
- 2011년 7월 소비는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한 반면 투자는 전년동월대비 2.7% 감소
 - 소비재판매액지수는 컴퓨터·통신기기, 승용차, 가전제품 등 내구재(12.6%)와 의복, 오락·취미 등 준내구재(4.0%)의 판매가 늘어 전년동월대비 5.3% 증가함.
 - 설비투자는 일반기계류, 자동차는 늘었으나 전기 및 전자기기, 기타 운송장비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2.7% 감소함.
 - 건설기성(경상)은 공공과 민간부문 모두 실적이 부진하여 전년동월대비 7.4% 감소하였으며, 건설수주(경상)는 공공부문의 도로·교량, 공동주택 등의 수주감소와 민간부문의 부동산업 및 금융서비스업에서 주택과 사무실의 수주가 줄어 전년동월대비 34.6% 감소함.

○ 현재의 경기 상황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0.9로 전월보다 0.3p 상승하였고,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 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2.0%로 전월보다 0.3%p 상승함.

◆ 201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 전년동월대비 5.3% 상승(생활물가지수 5.2% 상승)

○ 2011년 8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22.5(2005=100)로 나타나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3% 상승하여 2008년 9월 5.1% 상승한 이후 35개월 만에 5%대로 진입함.

– 소비자물가지수의 지출목적별 동향을 보면, 전년동월대비 통신부문만 1.1% 하락하였고 나머지 부문은 모두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료품·비주류음료(11.4%), 교통(7.8%), 주거 및 수도·광열(5.5%), 가구집기·가사용품(4.1%) 등을 중심으로 상승 폭이 큼.

– 2011년 8월 생활물가지수는 124.4를 기록하여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하였으며, 특히 식품부문은 전월대비 2.1%, 전년동월대비 5.2% 상승함.

– 2011년 8월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9.9%, 전년동월대비 13.8% 상승함.

〈표 1〉 최근 경제일반 동향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2008					2009					2010					2011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p	연간 p	7월	1/4	7월p	
생산	광공업 생산	10.6	8.9	5.6	11.3	3.0	-15.7	-6.1	4.3	16.2	-0.8	25.8	19.5	10.9	11.7	16.2	14.8	10.6	3.8(-0.4)
	제조업 생산	10.7	9.3	5.5	-12.1	3.0	-16.5	-6.6	4.4	16.8	-0.9	26.8	20.2	11.2	11.9	16.7	15.2	10.9	3.8(-1.2)
	출하	8.9	6.6	5.3	-10.1	2.4	-14.9	-5.8	2.1	12.8	-1.7	21.8	17.2	9.9	11.9	14.4	13.0	11.9	3.0(-1.1)
	내수	5.3	1.7	1.7	-11.0	-0.7	-15.7	-5.9	3.4	12.3	-1.8	21.2	15.4	6.6	8.3	11.5	10.8	7.2	0.9(-0.5)
	수출	14.3	14.3	10.3	-8.8	7.1	-13.8	-5.7	0.4	13.3	-1.7	22.5	19.7	14.5	16.9	18.2	15.9	18.4	5.7(-1.9)
	서비스업생산	6.4	4.8	3.2	-0.4	3.4	-0.3	2.4	1.9	3.7	2.0	5.7	4.0	2.3	3.1	3.9	3.8	2.7	3.8(0.4)
소비	소비재 판매	3.9	2.9	1.4	-4.2	1.0	-4.7	1.5	2.8	10.8	2.6	9.9	4.9	7.5	5.1	6.6	8.9	5.1	5.3(2.3)
투자	설비투자	-0.9	-2.7	5.3	-13.4	-4.3	-17.9	-12.9	-9.9	10.2	-8.2	25.5	24.5	29.3	13.5	25.1	31.5	6.6	-2.7(-5.6)
물가		3.8	4.8	5.5	4.5	4.7	3.9	2.8	2.0	2.4	2.9	2.7	2.6	2.9	3.6	2.9	2.6	4.5	5.3(0.9)

주 : 1) 광공업 생산은 광업(C), 제조업(D), 전기·가스업(E, F)을 포함하나 거의 대부분 제조업을 대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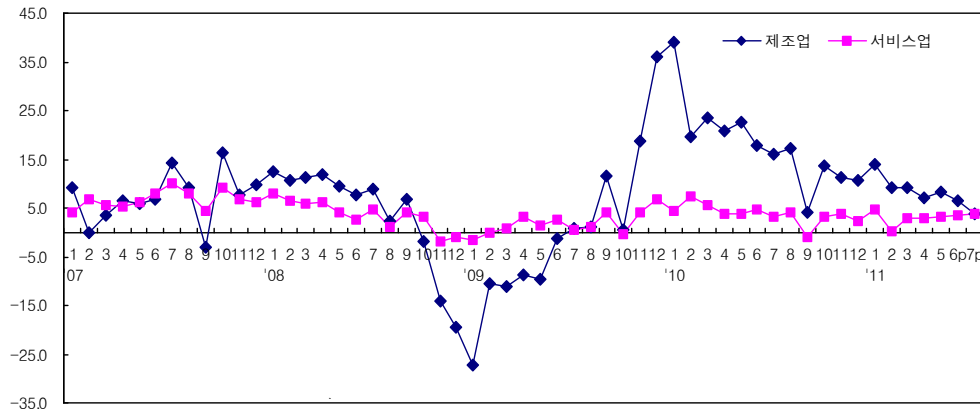
2) 서비스업 생산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제9차 개정, 2007.12.28)상의 13개 대분류(도소매업(G), 운수업(H), 숙박 및 음식점업(I),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J), 금융 및 보험업(K), 부동산 및 임대업(L),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M),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O), 교육서비스업(P),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S),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를 포괄하며, 이 중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E) 산업에서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제외함.

3) 물가지수는 8월 기준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그림 1]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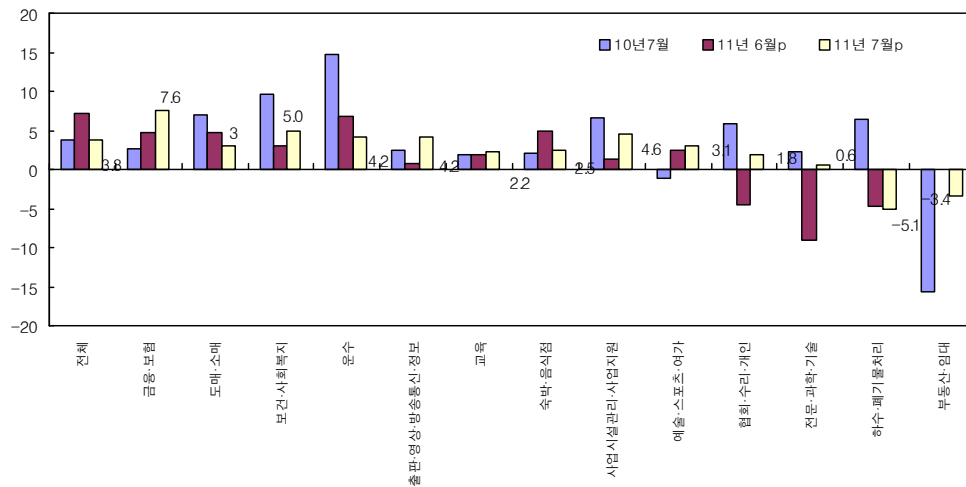
(단위: %, 전년동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대분류 11개 품목임.
 자료: 통계청(2011. 8), 『2011년 7월 산업활동동향』.

[그림 2] 서비스업 업종별 생산 추이

(단위: %,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주: p는 잠정치임.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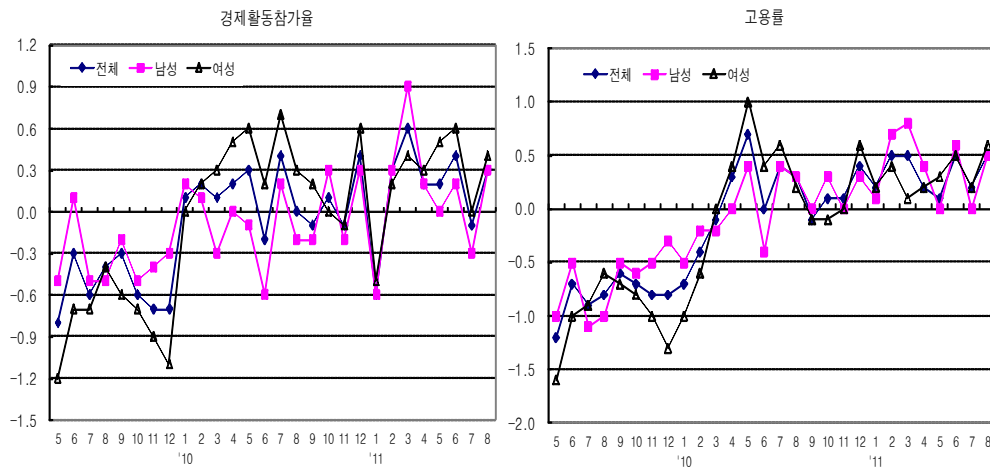
(김복순,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 취업자 증가 지속

- 2011년 8월 중 경제활동인구는 25,25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21천 명(1.7%) 증가
 - 남성 경제활동인구는 14,758천 명으로 230천 명(1.6%) 증가하였고, 여성은 10,499천 명으로 192천 명(1.9%) 증가
- 2011년 8월 중 경제활동참가율은 61.4%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 성별로 보면 남성(73.4%)은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 여성(50.0%)은 전년동월대비 0.4%p 상승(그림 3 좌측 참조).
- 2011년 8월 중 고용률은 59.6%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남성의 고용률은 71.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고, 여성의 고용률은 48.7%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그림 3 우측 참조).
- 2011년 8월 중 취업자는 24,49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90천 명(2.0%)이 증가
 - 성별로 보면, 남성 취업자는 14,27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7천 명(1.9%)이 증가하였고, 여성 취업자는 10,22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3천 명(2.2%)이 증가(그림 4 참조).
- 2011년 8월 중 실업자는 7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9천 명(-8.2%) 감소하였으며, 실업률은 3.0%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

[그림 3] 성별 참가율(좌)과 고용률(우) 증감 추이

(단위: %p,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표 2〉 최근의 고용 동향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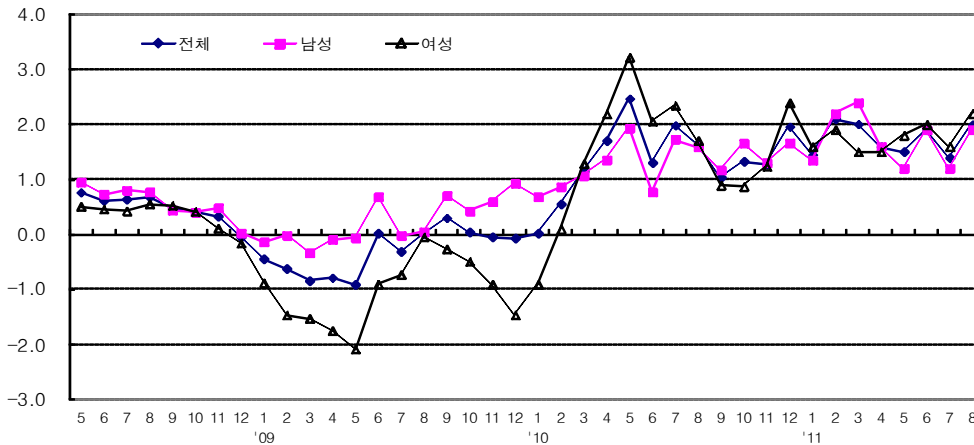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경제활동인구	24,166 (1.5)	25,038 (1.5)	24,993 (1.4)	24,836 (1.3)	24,796 (1.4)	24,488 (1.3)	25,437 (1.6)	25,473 (1.0)	25,257 (1.7)	
참가율	59.8	61.8	61.5	61.1	60.8	59.9	62.0	62.0	61.4	
취업자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05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36 (1.4)	24,495 (2.0)	
고용률	57.0	59.6	59.3	59.1	58.9	57.4	59.9	60.0	59.6	
실업자	1,130	868	873	831	808	1,028	865	837	762	
실업률	4.7	3.5	3.5	3.3	3.3	3.9	3.4	3.3	3.0	
비경제활동인구	16,254 (1.0)	15,493 (1.0)	15,656 (0.8)	15,815 (1.1)	15,962 (0.3)	16,392 (0.8)	15,559 (0.4)	15,614 (1.5)	15,862 (0.3)	

주: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고용률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 100
 자료: 통계청(2011. 9), 『2011년 8월 고용동향』.

- 남성 실업자는 486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7천 명(-7.1%) 감소, 여성 실업자는 277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1천 명(-10.2%) 감소
 - 실업률은 남성이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감소, 여성은 2.6%로 전년동월대비 0.4%p 감소
- 2011년 8월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15,86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7천 명(0.3%) 증가
- 남성 비경제활동인구는 5,35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 명(0.0%) 감소하였고, 여성 비경제활동인구는 10,51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8천 명(0.5%) 증가

〔그림 4〕 성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2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 명 감소
-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중 특별한 사유 없이 그냥 쉬었다고 응답한 '쉬었음'은 1,6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62천 명(11.0%) 증가. 정규교육기관 재학, 입시 학원,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수강을 포함하는 '재학·수강'은 4,198천 명으로 125천 명(-2.9%) 감소

◆ 제조업 취업자 감소,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 2011년 8월 중 산업별 취업자의 전년동월대비 증감을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89천 명, 3.5%), 전기·운수·통신·금융업(190천 명, 6.7%), 도소매·숙박음식점업(86천 명, 1.6%)에서 증가한 반면, 농림어업(-39천 명, -2.2%), 제조업(-28천 명, -0.7%) 등에서는 감소
 - 2010년 이래 지속되었던 제조업 증가가 감소로 반전되었음(그림 5 참조).

〈표 3〉 산업별 취업자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3/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7월	8월	
전 산업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05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36 (1.4)	24,495 (2.0)	
농림어업	1,235 (-11.7)	1,733 (-4.6)	1,754 (-2.5)	1,752 (-2.0)	1,544 (-2.2)	1,207 (-2.3)	1,736 (0.2)	1,699 (-3.1)	1,713 (-2.2)	
제조업	3,911 (1.6)	4,015 (4.5)	4,053 (6.9)	4,058 (7.9)	4,131 (7.0)	4,139 (5.8)	4,127 (2.8)	4,079 (1.0)	4,031 (-0.7)	
건설업	1,644 (-3.6)	1,816 (2.5)	1,791 (5.4)	1,790 (6.5)	1,761 (3.3)	1,641 (-0.2)	1,774 (-2.3)	1,754 (-3.1)	1,789 (-0.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5,532 (-1.0)	5,461 (-1.3)	5,443 (-1.2)	5,402 (-1.7)	5,442 (-1.3)	5,471 (-1.1)	5,457 (-0.1)	5,581 (0.5)	5,488 (1.6)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	7,859 (3.2)	8,294 (3.9)	8,244 (0.9)	8,162 (0.4)	8,234 (1.0)	8,097 (3.0)	8,529 (2.8)	8,518 (2.3)	8,451 (3.5)	
전기·운수·통신 및 금융업	2,834 (4.1)	2,831 (2.4)	2,816 (2.3)	2,822 (3.0)	2,855 (1.9)	2,880 (1.6)	2,933 (3.6)	2,991 (6.9)	3,011 (6.7)	

주: 1)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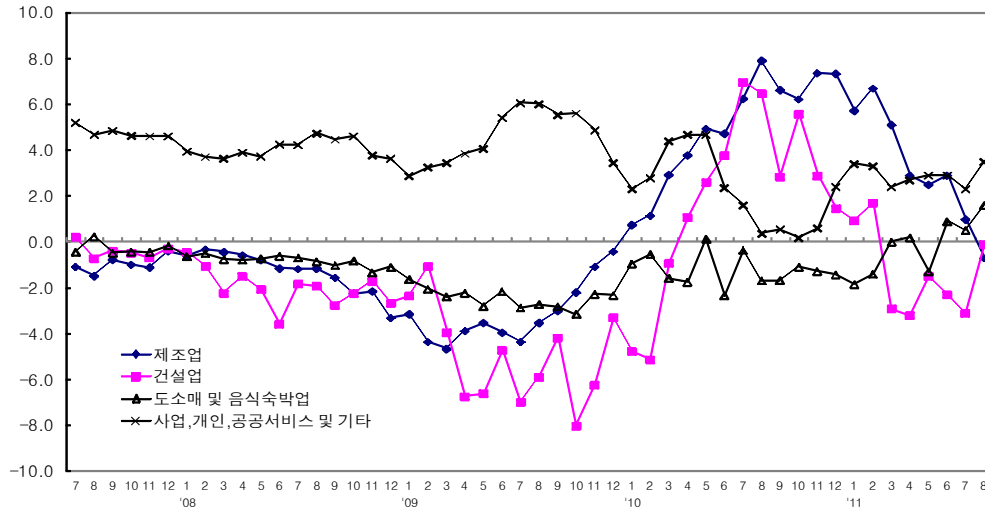
2) 2009년부터 9차 개정 산업분류를 적용.

3)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및 기타는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 부동산 및 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을 포함.

자료: 통계청(2011. 9), 『2011년 8월 고용동향』.

[그림 5] 산업별 취업자 증가율

(단위: %,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KOSIS.

◆ 상용직 증가 지속

- 2011년 8월 중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는 6,985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8천 명(0.4%)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는 17,510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62천 명(2.7%) 증가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10,710천 명으로 559천 명(5.5%) 증가한 반면, 임시근로자는 5,031천 명으로 91천 명(-1.8%) 감소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769천 명으로 6천 명(-0.3%) 감소
 - 상용근로자 중심으로 임금근로자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그림 6 좌측 참조).
 - 고용주, 자영업자는 소폭 증가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는 감소
- 2011년 8월 중 취업시간대별 취업자를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158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10천 명(73.6%) 증가,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17,604천 명으로 2,207천 명(-11.1%) 감소
 - 18시간 미만 취업자 1,167천 명 중에서 일거리가 없거나 사업부진 등의 경제적 이유로 추가취업 및 전직을 희망하는 자는 103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천 명(-25.1%) 감소

〈표 4〉 종사상 지위별 및 취업시간대별 취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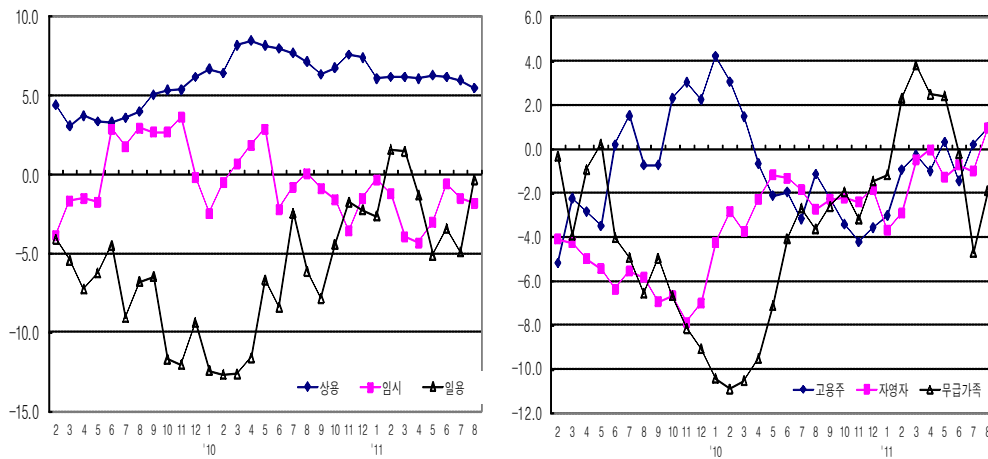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7월	8월	
전 체	23,037 (0.6)	24,170 (1.8)	24,120 (1.6)	24,005 (1.6)	23,989 (1.5)	23,459 (1.8)	24,572 (1.7)	24,636 (1.4)	24,495 (2.0)	
비임금근로자	6,638 (-3.5)	7,023 (-2.6)	6,994 (-2.4)	6,958 (-2.6)	6,778 (-2.5)	6,542 (-1.5)	7,004 (-0.3)	6,969 (-1.5)	6,985 (0.4)	
자영업주	5,514 (-1.9)	5,696 (-1.6)	5,646 (-2.3)	5,627 (-2.3)	5,514 (-2.6)	5,399 (-2.1)	5,657 (-0.7)	5,667 (-0.7)	5,680 (0.9)	
무급가족종사자	1,124 (-10.6)	1,327 (-6.9)	1,348 (-3.0)	1,331 (-3.7)	1,264 (-2.2)	1,143 (1.7)	1,348 (1.5)	1,302 (-4.7)	1,305 (-1.9)	
임금근로자	16,398 (2.3)	17,148 (3.8)	17,126 (3.3)	17,048 (3.5)	17,211 (3.2)	16,917 (3.2)	17,568 (2.5)	17,667 (2.5)	17,510 (2.7)	
상용근로자	9,808 (7.1)	10,060 (8.2)	10,158 (7.1)	10,151 (7.2)	10,320 (7.3)	10,413 (6.2)	10,681 (6.2)	10,718 (6.0)	10,710 (5.5)	
임시근로자	4,892 (-0.7)	5,179 (0.8)	5,148 (-0.5)	5,122 (0.1)	5,052 (-2.2)	4,804 (-1.8)	5,041 (-2.7)	5,137 (-1.5)	5,031 (-1.8)	
일용근로자	1,699 (-12.5)	1,909 (-8.8)	1,820 (-5.4)	1,775 (-6.1)	1,838 (-2.8)	1,701 (0.1)	1,846 (-3.3)	1,811 (-4.9)	1,769 (-0.3)	
36시간 미만	4,851 (56.9)	3,197 (6.7)	3,329 (-1.8)	3,547 (-1.6)	3,090 (4.4)	3,246 (-33.1)	3,210 (0.4)	3,562 (4.1)	6,158 (73.6)	
36시간 이상	17,671 (-8.7)	20,705 (1.1)	20,362 (2.4)	19,811 (2.9)	20,620 (1.1)	19,739 (11.7)	21,067 (1.7)	20,602 (0.4)	17,604 (-11.1)	

주 : ()안의 수치는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율.
 자료 : 통계청(2011.9), 『2011년 8월 고용동향』.

〈그림 6〉 임금근로자(좌) 및 비임금근로자(우) 증가율

(단위 : %, 전년동월대비)



주 : 고용주는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이고 자영자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임.
 자료 : 통계청 KOSIS.

◆ 전년동월대비 모든 학력에서 실업률 감소

- 2011년 8월 중 연령별 실업률은 15~29세(6.3%, -0.7%p), 30대(3.4%, -0.2%p), 40대(2.0%, -0.3%p), 50대(2.0%, -0.1%p)에서 감소
 - 60세 이상(1.8%, 0.0%p)은 증가
 - 교육정도별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중졸 이하(2.0%, -0.5%p), 고졸(3.5%, -0.3%p), 대졸 이상(3.0%, -0.4%p) 모든 학력에서 감소
- 2011년 8월 중 전체 실업자 762천 명을 과거 취업경험 유무로 살펴보면, 취업무경험 실업자는 32천 명으로 전년동월대비 9천 명 증가하였고, 취업유경험 실업자는 731천 명으로 78천 명 감소

〈표 5〉 연령별·교육수준별 실업자 및 실업률

(단위: 천 명,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2010					2011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8월	9월			7월	8월	
전 체	1,130(4.7)	868(3.5)	873(3.5)	831(3.3)	808(3.3)	1,028(4.2)	865(3.4)	837(3.3)	762(3.0)	
15~29세	408(9.5)	332(7.7)	323(7.6)	281(7.0)	297(7.1)	372(8.8)	332(7.9)	332(7.6)	265(6.3)	
30~39세	234(3.9)	217(3.6)	213(3.5)	220(3.6)	194(3.2)	237(4.0)	211(3.5)	184(3.1)	201(3.4)	
40~49세	192(2.9)	154(2.3)	165(2.5)	157(2.3)	151(2.2)	167(2.5)	145(2.1)	138(2.0)	138(2.0)	
50~59세	150(3.2)	105(2.1)	113(2.3)	105(2.1)	114(2.3)	133(2.7)	107(2.0)	107(2.0)	103(2.0)	
60세 이상	146(5.8)	61(2.1)	59(2.0)	54(1.8)	53(1.9)	119(4.5)	70(2.3)	77(2.5)	56(1.8)	
중졸 이하	241(5.1)	131(2.5)	131(2.5)	129(2.5)	112(2.2)	195(4.1)	112(2.1)	118(2.3)	103(2.0)	
고졸	493(5.0)	386(3.8)	408(4.0)	377(3.8)	392(3.9)	465(4.6)	408(4.0)	423(4.1)	357(3.5)	
대졸 이상	396(4.2)	352(3.6)	334(3.5)	325(3.4)	304(3.1)	369(3.8)	345(3.4)	296(2.9)	302(3.0)	
취업무경험실업자	57	46	35	22	38	52	45	64	32	
취업유경험실업자	1,072	822	838	809	770	977	820	773	731	

주: ()안의 수치는 실업률.
 자료: 통계청(2011. 9), 『2011년 8월 고용동향』.

(성재민,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임금 및 근로시간동향

◆ 2011년 6월 명목임금상승률, 전년동월대비 0.4% 상승

○ 2011년 6월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2,790천 원으로 전년 동월(2,780천 원)대비 0.4% 상승

- 상용근로자의 경우 기본급 등을 포함한 정액급여는 전년동월대비 4.2% 증가하였으나 초과급여의 증가율은 8.6%, 특별급여 증가율은 22.0% 감소하여 2011년 6월 상용근로자 임금상승률은 2010년 6월 대비 1.8% 감소한 2,976천 원을 기록
- 임시·일용근로자는 전년동기대비 13.1% 상승한 1,053천 원의 임금총액을 기록
- 임시·일용근로자의 임금 상승에 힘입어 전체근로자 임금총액은 플러스 증가를 기록

○ 실질임금은 3.9% 감소

- 소비자물가 상승률(2005년 기준)을 감안한 실질임금 총액은 2,313천 원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

〈표 6〉 임금관련 주요지표 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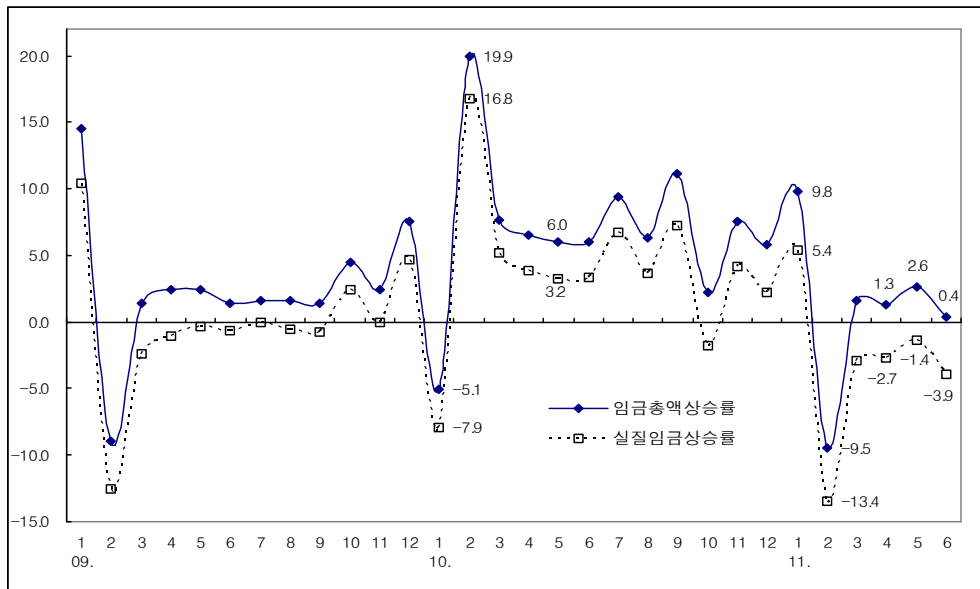
(단위: 천 원/월, 2005=100.0, %)

	2008	2009	2010	2011							
				상반기	2/4분기		상반기	2/4분기		6월	
					6월	1/4분기		2/4분기			
전체 근로자 임금총액	2,569 (-)	2,636 (2.6)	2,816 (6.8)	2,744 (6.6)	2,666 (6.2)	2,780 (6.0)	2,766 (0.8)	2,830 (0.2)	2,703 (1.4)	2,790 (0.4)	
상용 근로자	임금 총액	2,802 (-)	2,863 (2.2)	3,047 (6.4)	2,966 (6.6)	2,903 (6.3)	3,031 (6.1)	2,930 (-1.2)	2,992 (-1.3)	2,869 (-1.2)	2,976 (-1.8)
	정액 급여	2,057 (-)	2,139 (4.0)	2,234 (4.5)	2,217 (4.5)	2,223 (4.8)	2,232 (5.1)	2,312 (4.3)	2,308 (4.4)	2,316 (4.2)	2,325 (4.2)
	초과 급여	179 (-)	175 (-2.2)	196 (12.2)	190 (15.3)	198 (13.4)	201 (13.6)	175 (-7.9)	168 (-8.4)	183 (-7.4)	184 (-8.6)
	특별 급여	566 (-)	550 (-2.8)	617 (12.3)	560 (13.1)	483 (10.7)	598 (7.5)	442 (-21.0)	516 (-18.9)	369 (-23.5)	467 (-22.0)
임시·일용근로 자 임금총액	1,052 (-)	1,073 (1.9)	1,056 (-1.6)	1,057 (-1.0)	1,062 (0.1)	1,053 (0.8)	1,172 (10.8)	1,149 (9.2)	1,192 (12.3)	1,191 (13.1)	
실질임금 (전체 근로자)	2,342 (-)	2,337 (-0.2)	2,426 (3.8)	-	2,306 (3.5)	2,407 (3.4)	-	2,364 (-4.1)	2,243 (-2.7)	2,313 (-3.9)	
소비자물가지수	109.7 (4.7)	112.8 (2.8)	116.1 (2.9)	-	115.6 (2.6)	115.5 (2.6)	-	119.7 (4.5)	120.5 (4.2)	120.6 (4.4)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 <http://ecos.bok.or.kr/>

[그림 7] 임금상승률 추이

(단위 : %)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명목임금은 전년동월에 비해 증가했으나, 물가가 반영된 실질임금은 2011년 2월 이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음(그림 7 참조).

◆ 광업,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에서 임금상승률이 높게 나타남

○ 광업의 임금상승이 가장 높은 반면, 부동산 및 임대업의 임금감소가 가장 높음.

- 2011년 6월 전년동월대비 산업별 월평균 임금총액의 상승률을 보면, 광업(22.9%), 숙박 및 음식점업(16.2%), 건설업(15.9%),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11.1%) 순으로 나타남.
- 반면, 2011년 6월 전년동월대비 임금이 감소한 산업은 부동산 및 임대업(-20.2%), 사업서비스업(-11.4%) 등으로 이는 특별급여가 감소한 데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임금총액이 가장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며, 가장 적은 산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나타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의 높은 명목임금은 6월 상용근로자의 특별급여가 다른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기 때문임.

〈표 7〉 산업별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상반기	6월	상반기	6월
전 산업	2,816 (6.8)	2,744 (6.6)	2,780 (6.0)	2,766 (0.8)	2,790 (0.4)
광업	3,000 (7.3)	2,933 (6.9)	3,608 (20.9)	3,324 (13.4)	4,433 (22.9)
제조업	2,985 (9.1)	2,854 (8.9)	2,924 (7.4)	2,898 (1.5)	2,937 (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455 (7.0)	5,281 (8.2)	8,504 (29.2)	5,189 (-1.7)	7,710 (-9.3)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업	2,441 (5.2)	2,360 (5.3)	2,355 (3.4)	2,391 (1.3)	2,415 (2.5)
건설업	1,944 (7.9)	1,925 (6.9)	1,893 (6.3)	2,175 (13.0)	2,193 (15.9)
도매 및 소매업	2,769 (7.1)	2,701 (6.8)	2,614 (5.9)	2,817 (4.3)	2,811 (7.5)
운수업	2,381 (5.4)	2,307 (5.7)	2,445 (4.5)	2,316 (0.4)	2,430 (-0.6)
숙박 및 음식점업	1,462 (5.0)	1,434 (3.0)	1,459 (3.5)	1,624 (13.2)	1,696 (16.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385 (4.7)	3,320 (4.7)	3,256 (4.8)	3,670 (10.6)	3,618 (11.1)
금융 및 보험업	4,680 (4.7)	4,759 (7.1)	4,595 (4.4)	4,796 (0.8)	4,727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1,965 (4.3)	1,983 (6.4)	2,557 (33.1)	1,990 (0.3)	2,039 (-20.2)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3,957 (6.9)	3,782 (6.8)	3,740 (0.1)	3,682 (-2.6)	3,712 (-0.8)
사업서비스업	1,848 (8.2)	1,816 (8.3)	1,872 (7.4)	1,654 (-8.9)	1,659 (-11.4)
교육서비스업	3,157 (1.4)	3,154 (0.4)	2,940 (1.5)	2,978 (-5.6)	2,761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2,594 (2.4)	2,553 (2.0)	2,588 (2.6)	2,429 (-4.9)	2,426 (-6.2)
여가관련서비스업	2,107 (0.9)	2,054 (-0.4)	2,124 (-2.7)	2,078 (1.2)	2,206 (3.9)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업	2,102 (4.0)	2,064 (4.6)	2,132 (4.5)	2,147 (4.0)	2,186 (2.5)

주: 1) 전체 임금근로자 명목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전 규모에서 명목임금 감소

- 2011년 6월 규모별 명목임금상승률은 5~299인, 300인 이상 규모에서 모두 감소
 - 상용근로자 5~299인 규모의 명목임금상승률은 2011년 6월 기준 2,638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6% 하락하였고, 300인 이상 사업체는 4,230천 원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
 - 5~299인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초과급여와 특별급여의 하락에 기인한 것이고, 300인 이상 사업체의 임금총액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2009년 감소했다가 2010년 증가한 특별급여의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표 8〉 사업체규모별 상용근로자 임금동향(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천 원/월, %)

		2010			2011	
			상반기	6월	상반기	6월
전규모 (5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3,047 (6.4)	2,966 (6.6)	3,031 (6.1)	2,930 (-1.2)	2,976 (-1.8)
	정액급여	2,234 (4.5)	2,217 (4.5)	2,232 (5.1)	2,312 (4.3)	2,325 (4.2)
	초과급여	196 (12.2)	190 (15.3)	201 (13.6)	175 (-7.9)	184 (-8.6)
	특별급여	617 (12.3)	560 (13.1)	598 (7.5)	442 (-21.0)	467 (-22.0)
5~299인	상용임금 전체	2,699 (5.5)	2,639 (5.9)	2,682 (6.1)	2,611 (-1.1)	2,638 (-1.6)
	정액급여	2,082 (4.3)	2,065 (4.5)	2,082 (5.1)	2,177 (5.4)	2,192 (5.3)
	초과급여	176 (13.6)	172 (17.6)	179 (15.6)	147 (-14.2)	154 (-14.1)
	특별급여	441 (8.4)	403 (9.1)	421 (7.6)	287 (-28.7)	292 (-30.7)
300인 이상	상용임금 전체	4,291 (9.1)	4,129 (8.8)	4,269 (6.6)	4,132 (0.1)	4,230 (-0.9)
	정액급여	2,779 (5.2)	2,756 (4.8)	2,763 (5.5)	2,823 (2.4)	2,820 (2.1)
	초과급여	268 (9.6)	257 (10.7)	278 (9.7)	282 (9.7)	294 (5.8)
	특별급여	1,245 (18.7)	1,115 (19.6)	1,228 (8.3)	1,027 (-7.9)	1,116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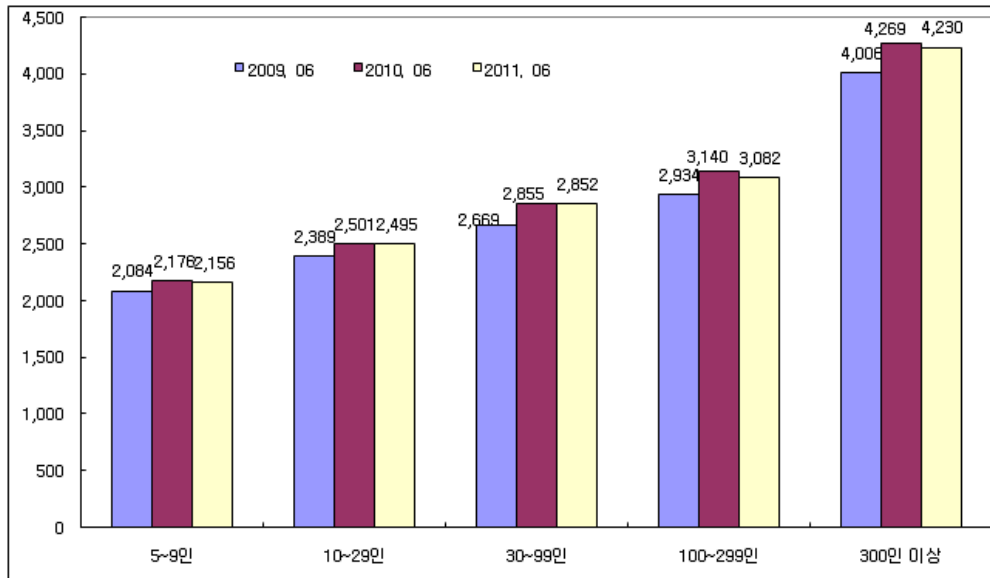
주: 1)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2)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 상승률.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그림 8〉 상용근로자 사업체규모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

(단위: 천 원)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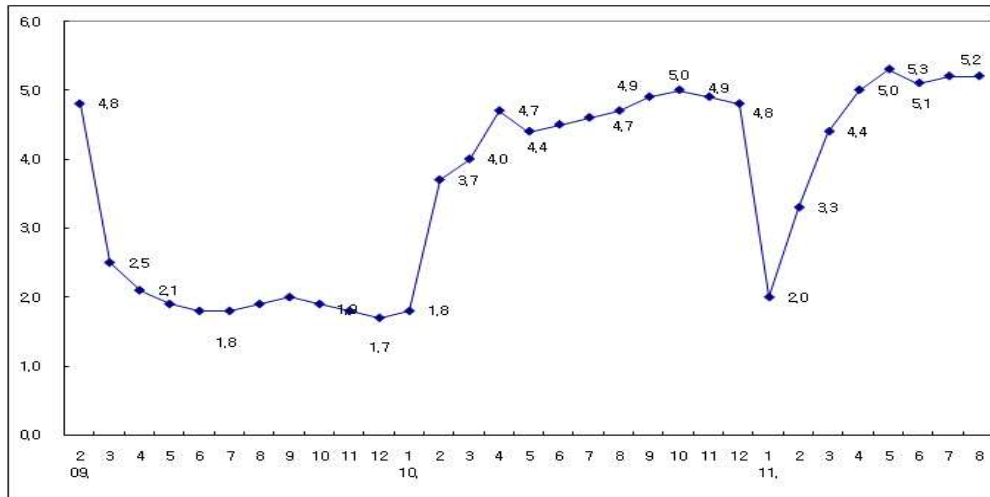
◆ 2011년 8월 협약임금인상률 5.2%

○ 2011년 8월 협약임금인상률은 5.2%를 기록

- 2011년 8월 말 협약임금인상률(임금총액기준)은 5.2%로 2010년 같은 기간의 인상률(4.7%)에 비해 0.5%p 상승하였음.

[그림 9] 협약임금 인상률 추이

(단위 : %)



- 주: 1) 협약임금 인상률이란 100인 이상 사업장의 노사가 협약으로 정한 임금인상률로서 일반적으로 승진에 따른 인상분, 초과급여, 특별상여금 등 변동성 급여는 제외됨. 따라서 실제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명목임금의 상승률과는 다름.
- 2) 임금총액 상승률은 5인 이상 상용직 기준임.
- 3) 월별 협약임금인상률은 당월분이 아니라 당월까지 누계분 인상률임.

자료: 고용노동부 e-나라지표, www.index.go.kr

◆ 2011년 6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2011년 6월 근로시간, 전년동월대비 0.4% 감소

- 2011년 6월 전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총 근로시간은 179.6시간을 기록하여 전년 동월(180.4시간)에 비해 0.8시간(0.4%)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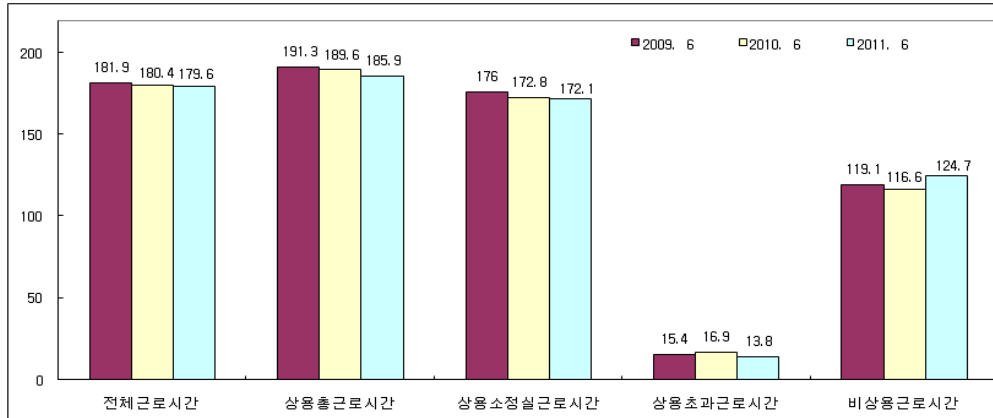
※ 2011년 6월과 2010년 6월은 월력상 근로일이 동일

- 상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85.9시간으로 전년동월(189.6시간)대비 2.0%, 소정 실근로시간은 172.1시간으로 전년동월(172.8시간)대비 0.4%, 초과근로시간은 13.8시간으로 전년동월(16.9시간)대비 18.3% 감소(그림 10 참조).

- 한편, 임시·일용근로자의 총 근로시간은 124.7시간으로 전년동월(116.6시간)대비 8.1시간(6.9%) 증가함.

[그림 10] 내역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

(단위 : 시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숙박 및 음식점업, 광업, 건설업 등을 제외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광업, 건설업은 증가한 반면,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대부분 산업에서 근로시간 감소

[표 9]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5인 이상 사업체 기준)

(단위 : 시간/월, %)

	2009	2010	2011			
			상반기		6월	
			상반기	6월	상반기	6월
전 산업	176.1(-0.3)	176.7(0.3)	175.1(0.6)	180.4 (-0.8)	175.1(0.0)	179.6(-0.4)
광업	187.6(4.0)	188.1(0.3)	185.2(-0.8)	186.1 (-4.0)	185.5(0.2)	193.8(4.1)
제조업	188.5(-0.8)	192.1(1.9)	190.5(3.4)	197.8 (0.5)	189.9(-0.3)	195.4(-1.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77.9(2.5)	176.9(-0.6)	174.9(0.2)	180.1 (-2.3)	175.2(0.2)	182.0(1.1)
하수·폐기물처리 및 환경복원	194.0(0.3)	192.9(-0.6)	191.2(-0.1)	196.2 (-0.8)	184.7(-3.4)	189.4(-3.5)
건설업	147.2(-5.5)	146.1(-0.7)	146.9(-2.1)	149.5 (-1.5)	154.2(5.0)	155.5(4.0)
도매 및 소매업	179.0(0.2)	177.2(-1.0)	175.8(-0.8)	183.2 (0.2)	173.7(-1.2)	179.3(-2.1)
운수업	184.4(8.0)	184.6(0.1)	183.0(0.9)	185.7 (-0.5)	178.0(-2.7)	182.9(-1.5)
숙박 및 음식점업	164.3(-3.5)	163.7(-0.4)	161.2(-1.8)	162.8 (-1.6)	186.3(15.6)	193.2(18.7)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	166.8(0.4)	166.2(-0.4)	164.8(0.6)	170.3 (-2.2)	162.9(-1.2)	168.8(-0.9)
금융 및 보험업	166.8(0.5)	165.3(-0.9)	163.5(-1.4)	168.4 (-3.6)	161.2(-1.4)	167.2(-0.7)
부동산업 및 임대업	202.0(-1.2)	200.4(-0.8)	199.2(-1.0)	200.9 (-2.6)	193.2(-3.0)	195.6(-2.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67.7(0.1)	166.3(-0.8)	164.5(-0.5)	169.7 (-4.0)	164.2(-0.2)	170.0(0.2)
사업서비스업	179.0(-1.3)	180.1(0.6)	176.9(-0.6)	180.8 (-2.0)	168.7(-4.6)	173.2(-4.2)
교육서비스업	153.7(1.9)	149.9(-2.5)	147.7(-3.2)	151.6 (-3.3)	150.3(1.8)	153.6(1.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76.4(0.2)	176.5(0.1)	174.4(0.2)	181.5 (0.2)	171.5(-1.7)	174.6(-3.8)
여가관련서비스업	161.6(1.6)	158.7(-1.8)	157.6(-2.1)	162.5 (-1.9)	155.4(-1.4)	156.8(-3.5)
협회·단체 및 기타개인서비스	175.5(-0.2)	173.9(-0.9)	172.7(0.1)	180.2 (0.1)	174.0(0.8)	179.4(-0.4)

주 : 1) 전체 임금근로자 기준.
 2) ()안은 전년대비 증가율.
 3) 9차 산업분류 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2011년 6월 산업별 근로시간을 보면, 숙박 및 음식점업(193.2시간, 18.7%), 광업(193.8시간, 4.1%), 건설업(155.5시간, 4.0%) 등에서 근로시간이 증가
- 한편, 사업서비스업(173.2시간,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174.6시간, -3.8%) 등에서 근로시간이 감소
- 2011년 6월 산업별 월평균 근로시간은 부동산 및 임대업(195.6시간)이 가장 길었으며, 교육서비스업(15.36시간)이 가장 짧은 업종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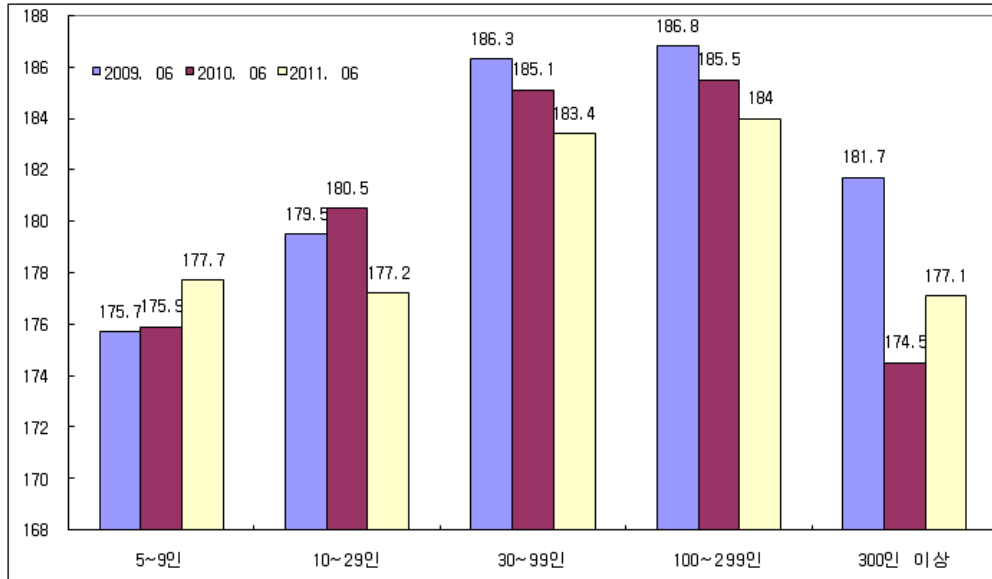
◆ 5~299인 규모에서 근로시간 감소

○ 2011년 6월 규모별 근로시간은 5~299인 이상 사업장에서 감소

- 상용근로자 5~299인 사업체의 총 근로시간은 180.2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0.9% 감소한 반면, 300인 이상 사업체는 177.1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5% 증가

[그림 11] 규모별 월평균 근로시간 추이

(단위: 시간/월)



주: 전체 근로자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정성미, 노동정책분석실 책임연구원)

노사관계 동향

◆ 노사분규 발생 추이

○ 2011년 1월 1일부터 9월 22일 현재까지 노사분규 누적발생건수는 46건으로 나타나며, 근로손실일수(2011년 9월 14일 기준)는 372,125일로 집계됨.

〈표 10〉 노사분규 발생 추이

(단위: 개소, %)

	2011. 1. 1~2011. 9. 22.	전년 동기	증 감(%)
노사분규 발생건수	46	63	△27.0
종 결	39	49	-
진 행	7 (3)	14 (2)	()는 전년도 이월
근로손실일수	372,125	378,385	△1.7

주: 당해 연도의 누적치임. 근로손실일수는 9월 14일 기준임.
자료: 고용노동부.

◆ 주요 분규사업장 동향

○ 장기분규 사업장

■ 한진중공업

- 9월 현재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과 4명의 금속노조 조합원이 고공농성을 진행 중에 있음.
- 9월 6일, 조합원 등 500여 명이 회사 건너편 학교 앞에서 이소선 여사 추모제를 진행하던 중, 이 중 100여 명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지도위원이 농성 중인 크레인에 접근하기 위해 정문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이 저지하자 해산함.
- 9월 8일, 채길용 지회장은 금속노조 박유기 위원장에게 “금속노조와 해고자들이 노사정교섭 중단을 요구하고, 지회임원 선거를 강요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우선 해명”하라며 금속노조가 한진 노사문제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대자보로 게시함. 한진중공업 지회가 추석 전까지 임단협을 타결하려고 하였으나, 금속노조 부위원장이 해고자들과 간담회 과정에서 “노사정 특별논의를 중단하고, 추석 후 지회 임원선거에 돌입하자”고 지회에 요구한 것이 발단이 됨. 이에 지회는 9월 9일

- 교육생 및 영도조합원과 소통하고, “조합원 총회” 또는 난상토론을 하는 보고대회를 하겠다고 하였으나 예정된 노사간담회는 노조 불참(내부갈등)으로 무산됨.
- 9월 16일, 한진중공업 정리하고 철회 투쟁위원회는 정리하고 및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채길용 지회장은 노조배신행위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지회 임원선거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유인물을 배포함. 이 유인물은 회사 경영진은 현 사태에 책임을 지고 물러나고, 단일후보로 정리하고 막고 불법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일에 조합원의 동참을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음. 이에 노조 지회는 9월 19일 예정이었던 조합원 총회 관련 유인물을 배포함. 주요내용으로는 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면 노사교섭은 중단되고 현 사태는 장기화되며, 집행부는 임단협과 현안문제를 10월 중에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천명함.
 - 그러나 지회 조합원 반발로 인해 9월 19일 조합원 총회는 취소되었음. 21일, 채길용 지회장은 사내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함. 기자회견의 주요내용은 이번 선거에 현 집행부도 참여하기로 하며, 당선시 11월 중순 이내에 임단협 등 현안문제를 해결한다는 입장을 밝힘. 현재 한진중공업의 문제는 희망버스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노사협상으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힘.
 - 한편 해고자 12명은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의 자택 앞에서 국정조사 실시 및 정리하고 철회 등을 요구하며 9월 21일부터 농성 중임.
 -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 분회(시외버스) 및 전주시내버스 5개사 분회
 - 9월 14일, 전북고속측은 공공운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교섭대표노조(전북지역 자동차노조)와의 8월 18일 임금협약 체결을 이유로 교섭 불참을 통보함. 한편 공공운수노조 전북고속 분회는 노조인정 등을 요구하며 2010년 12월부터 파업을 계속 중에 있음. 사측은 노선 축소운행, 대체인력 투입 등으로 94.7% 정도의 운행률 유지하고 있음.
 - 9월 16일, 제일여객분회는 단협요구안(비공개)을 제시하고 타임오프 적용(구체적 내용 미협의 상태)을 요구함. 사측은 검토시간을 요구하였고, 타임오프는 타 회사와 협의 후 결정하자고 주장함.
 - 9월 18일, 전주시내버스 5개사 분회가 사측의 교섭참여 등을 요구하며 9월 5일부터 준법운행 계속(출퇴근시간대 규정속도 준수, 가스충전 등을 이유로 결행). 전주시내버스 3개사 공공운수노조 분회(신성, 호남, 전일)는 9월 14부터 요금통 미부착 운행 및 19일부터는 행선판 미교체 운행 중임.
 - 9월 22일, 전주시내버스 5개사는 운수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전북자동차노조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¹⁾이 진행 중임을 이유로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통보함.

■ 유성기업

- 9월 9일, 사측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대상자에 대한 전원출석을 소명하였음.2) 사측은 징계대상자 120명 중 107명에 대해 우선 9월 6일부터 9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위를 개최하였고, 107명 중 40명에 대한 징계사유 사실관계를 확정함. 9월 16일부터 20일까지 4회에 걸쳐 징계사유 사실관계 미확정자 67명에 대한 사실 심리 개최
- 9월 10일, 사측은 8월 22일 후 복귀자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조직활성화 창출과정’ 교육을 실시한 바 있음. 한편, 9월 9일 천안구치소에 구속수감 중이던 아산지 회장(김성태), 아산지회장의부장(김순석) 등 2명 보석 석방됨(5월 18일부터 24일까지 공장점거와 관련되어 구속된 바 있음).
- 사측은 8월 16일 법원 조정안3)에 따라 복귀대상 조합원 239명 중 228명(산전후휴가, 산재 등 11명 제외)을 8월 22일부터 9월 7일까지 순차적으로 복귀완료함. 9월 16일부터 21일까지 징계사유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징계대상자 67명에 대해 4차례 징계위 재개

■ SC제일은행

- 8월 29일 업무복귀 이후, 8월 31일 1일 파업에 돌입. 9월 현재 사실상 쟁의상태임. 노조는 9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합활동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업무배제, 지점폐쇄 등)한 상태임.4) 7월 노사간 수정안 제시 이후 별다른 교섭의 진전이 없으며, 핵심 쟁점에 대해서는 노사의 입장 변화가 없는 상황임.5)

1) 전북자동차노조는 사측이 교섭창구단일화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공운수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4개사: 신성, 호남, 전일, 제일)과 전북자동차노조에 조합비를 인도하지 않은 것(제일)을 이유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상태임.

2) 8월 2일, 사측은 단협 및 취업규칙 위반행위자(고의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행위, 폭력행위 등)를 추려내어 징계대상자를 121명으로 확정함.

3) 지난 8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노조원 269명이 낸 유성기업 직장폐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1차 심리에서 노조원의 직장 복귀를 위한 절충안과 징계절차 일시 중지를 노사 양측에 제시함. 3차 심문에서 노사는 8월 31일까지 노조원 전원복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원 조정사항에 합의함.

4) 사측은 영업중단 중인 42개 지점 근로자 400여 명 중 조합원 146명을 다른 지점으로 파견조치하려다가 노조가 산별단체협약 제114조 위반이라며 반발하자 중단함.

5) 사측 수정안(6.24): 성과급제 TFT 구성 논의(시행일 12.1.1, 매주 3회, 2개월 이내 합의), 임금 2% 인상(비정규직 임금 4%), 통상임금 100% 특별보로금, 명예퇴직제도 폐지 등.
 노조 수정안(6.30): 정규직 3%, 비정규직 6% 인상, 합의시 특별보로금 200% 등.
 사측 수정안(7.20): 성과급제 TFT 구성 논의, 2010년 임단협 안건 가운데 우선 임금인상률(정규직 2%, 비정규직 4% 인상)에 합의하고, 상설 명예퇴직제도와 후선발령제도는 시중 은행들이 현재 운용

- 노조는 업무복귀 이후 정시 출퇴근 등 준법투쟁을 계속 중에 있음. 9월에 들어 지난 7일, 제3차 산별중앙교섭을 개최하였으나 진전 없이 교섭이 종료되었음. 고용노동청의 면담 등 중재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섭은 크게 진전되지 못하고 공전되고 있음. 9월 8일, 서울고용노동청의 주선으로 노사대표가 만났음에도 입장차는 여전한 상태임.

○ 주요 분규사업장 등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지부

- 9월, 사회보험지부는 임금인상, 성과연봉제 확대 반대 등을 주장하며 1일 지명파업을 지속함. 이미 9월 16일까지 4차례 1일 지명파업을 실시함. 8월 25일에는 부산·경남·대구·경북·강원지회가, 9월 1일에는 경인·충북지회가, 9월 8일에는 대전·충남·광주·전남·전북지회가 1일 파업에 돌입한 바 있음.
- 직장노조 및 사회보험지부는 4월부터 5월까지 7차례 임금교섭을 실시하였으나 진전이 없어 5월 26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거친 뒤, 6월 10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찬성 가결(사회보험지부 84.2%, 직장노조 82.5%). 그러나 5월 이후 교섭은 중단되어 있는 상황임.
- 노조는 임금 총액대비 14% 인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측은 4.1%를 제시. 사측은 3급 직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실시(현행 2급 이상 성과연봉제 실시)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조는 수용불가 입장

■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조

-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8월 31일부터 폭행 등을 이유로 사내하청 해고자 14명⁶⁾에 대해 공장출입 금지조치를 계속 중임.⁷⁾ 9월 2일경, 전주지회 해고자·현대차지부 조합원 등 500여 명이 현대차전주공장 관리직 등 500여 명과 대치하다 해산함. 이날 전주지회는 현대차 전주공장 공장장·지원실장·지원부장 등 관리자 5명을 폭력 혐의로 완주경찰서에 고발한 상태임.
- 울산지회는 비정규직 철폐 등을 주장하며 9월 1일부터 출근투쟁 진행 중임. 9일까지 출근투쟁을 진행하고, 9월 6일에는 전주지회 투쟁을 지원함.

중인 수준으로 변경.

- 6) 전주지회 해고자 14명, 정직자 9명,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부당해고 구제신청 중임.
- 7) 8월 30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은 하청업체 해고자 14명에 대해 8월 31일부로 출입 불허를 통보함. 주된 이유는 사내하청노조 집회주도·선동 및 사내하청업체 대표에 대한 폭행 등임. 8월 24일 사내하청업체 명정기업 대표 등 2명, 조합원 2명 폭행혐의로 고소(완주경찰서 수사 중)→ 8.31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원하청 조합원 12명을 폭행혐의로 고발.

- 9월 15일에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아산지회 해고자 등 193명이 현대자동차와 사내하청업체 9개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41명)·부당정직(152명)·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판정회의를 개최하여,⁸⁾ 부당해고 41명·부당정직 146명 인정, 5명 부당정직 기각, 1명 부당정직 각하(퇴사), 부당노동행위 모두 기각 또는 각하 판정을 내림. 이날 판정에서 8개사는 불법파견, 1개사는 도급을 인정함. 구 파견법 고용의제가 적용되는 145명 중 144명(해고 31, 정직 113)에 대해서는 부당징계를 인정함.
- 지회들은 지속적으로 해고자들의 노조 사무실 출입을 요구하고 있음. 전주지회는 앞서 설명한 바대로 출근 선전전과 사내 중식집회를 계속하고 있으며, 담장을 넘어 노조사무실로 진입하는 등 사측과의 불가피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음. 현대차 노조도 함께 지회 노조 사무실 출입투쟁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임.
- 9월 21일, 현대차 이경훈 지부장 등 노조대표 4명과 전주공장측은 사내하청 전주지회 해고자의 노조사무실 출입과 관련한 구두 합의를 함. 합의한 내용은 해고자 4명(전주지회 지회장·사무장·조직1부장·노동안전부장)에 대한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고, 나머지 10명의 해고자에 대해서는 원청노조(현대차 노조) 요청과 사측 허가시 원청노조원 동행하에 노조사무실 출입을 허용하기로 함. 해고자의 현장방문은 원청노조원의 동행하에 가능하도록 하며, 생산현장에서 집회·집단행동을 금지하기로 하여 9월 22일, 사측은 지회 해고자들의 출입을 막았던 정문 컨테이너를 철거함.

■ 온라인

- 제1노조는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8월 30일부터 재파업 계속(미화원 및 경비 40명 참가)⁹⁾. 이미 8월 25일 현장복귀 이후 재파업에 돌입하고 있으며, 9월 16일 전주대학교 학생회관 앞 천막농성장에서 교섭을 진행함.¹⁰⁾ 노조의 주요 요구안은 계약만료된 2명의 조합원을 복직시키고 정년을 연장하라는 것임. 이미 임금 및 복리후생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9월 1일 잠정합의한 상황임.
- 잠정합의 주요내용은 9월 1일부터 전체직원 임금 6% 인상, 미화원 근무시간 연장(6.5→7.5시간), 명절격려금 지급 정례화, 경비·미화원 식대조정(2,500원→3,000

8) 사측의 징계이유는 2010.11.16~12.9 불법파업, 2010.2.28~3.8 징계추진에 반발한 작업거부(4~8시간) 및 잔업거부(2시간), 3.11~3.15 2차 징계추진에 반발한 작업장 무단이탈 및 특근거부에 대한 것임.
 9) 제1노조는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이며(2011년 6월 16일 설립, 조합원 67명), 제2노조는 온라인노동조합(상급단체 미가입, 2011년 7월 6일 설립, 조합원 209명)임.
 10) 8월 19일에 제1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답가처분’이 전주지방법원에서 인용되면서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황임.

원) 등임.

- 9월 21일 제1노조와 사측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진전 없이 끝남. 노조는 임금 시급 5,410원, 용역계약서 및 지방서 공개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임금 평균 6% 인상(근무시간 1시간 연장), 계약서 등 공개 거부로 별 성과 없이 종료함. 이날 정동영 의원은 전주대 총장을 면담 후 제1노조 농성천막을 방문하여 조합원들을 격려했음.

■ 금융노조

- 9월 20일, 노조는 지부대표자 긴급회의를 개최함.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함. 9월 28일 노사 대표간 교섭이 예정되어 있음. 지난 3월 노조는 사측에 산별 중앙교섭 요구안을 전달하였으나 사측 교섭위원의 임기(2010.6.1~5.30) 등을 고려하여 5월 중순 이후에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하였고, 임금 외 단협은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자고 함(단협 만료일 2012.12.31). 지난 5월 12일 노사간 산별중앙교섭 상견례 개최를 한 이후, 양측의 입장이 진전되고 있지 않은 상태임.
- 양측의 입장은 노조는 총액임금 8.0%+ α 인상을 제시하였으나 사측은 이에 대해 제시한 안이 없음. 신입직원 초임 원상회복에 대해서는 논의불가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향후 상황변화에 따라 사측이 어떠한 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임. 근무시간 정상화, 성과연봉제(개인별 성과차등제) 도입 금지, 전임자처우 등 노사자율 결정 <논의불가>, 성과향상추진본부 등 구조조정 수단 부서 운영금지 등에 대해서 사측은 논의불가 입장을 바꾸지 않고 있는 상황임.

■ MBC

- 9월 9일, 본교섭을 개최하였으나 노사 모두 기존 입장 고수로 진전 없이 종료되었음. 본교섭 전 실무접촉에서 노조는 중간평가 실시에 대한 사측안을 수용하는 조건으로 전 노조위원장 이근행 복직, 라디오본부장 퇴진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함.
- MBC 노사의 핵심쟁점은 단체협약 해지 이후 단협상 공정방송 관련 규정. 노조는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는 사후적 견제장치일 뿐 인사권 침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단협에 공정방송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을 담은 선을 주장하고 있음.
- 9월 21일, 노사는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노조는 PD수첩 제작진 징계 철회¹¹⁾,

11) 9월 19일 사측은 광우병 관련 'PD수첩' 당시 제작진 5명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김보슬·조능희 PD에게 정직 3월, 송일준·이춘근 PD에게 감봉 6월, 정호식 PD는 감봉 3월의 징계를 내린 바 있음.

라디오본부장·시사교양국장 교체, R등급 폐지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측은 PD수첩 제작진 징계는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동시에 라디오본부장·시사교양국장 교체는 현재 불가하고, R등급¹²⁾은 차후 시행시 축소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함.

- 9월 22일, 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 5개 부문별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PD수첩 제작진 징계 중단, 경영자율성 확보 및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9월 26일 총파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 9월 22일, 노조는 9월 23일까지 사측의 입장변화가 없을 경우 9월 26일 파업 돌입 방침을 세움. 5개 부문별 조합원 간담회를 개최하여 파업의 당위성 및 입장을 설명하고 있음.

■ 오티스엘리베이터

- 오티스엘리베이터는 서울 영등포 소재의 엘리베이터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임. 외국계 회사로 국내에 종사하는 전체 종업원은 1,737명임. 노조는 한국노총 금속연맹을 상급단체로 두고 있으며 조합원수는 933명임.
- 노조는 지난 8월 22일부터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임. 현재 협정근로자 68명을 제외하고 865명 전원이 임금인상, 엘리트점검 추가실적 인정¹³⁾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상황임. 노조는 기본급 9% 인상을 주장하고 있으며, 사측은 기본급 3% 인상안을 제시함. 유지·보수 관련 엘리트점검 추가실적을 인정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측은 수용불가 입장.
- 노사 교섭은 8월 10일 이후(8차) 중단된 상황이며, 사측은 미국 본사 관계자와 단협에 의한 노동위원회 중재신청 여부를 논의하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금속노조

- 9월 6일, 노사는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2011년 중앙교섭 조인식’을 가짐.
-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노조는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실시하여 85.25%의 찬성으로 가결됨.

12) ‘R등급’은 인사평가 등급 중 최하위 등급으로 각 부문별로 일정비율(최하위 10% 정도)로 강제 할당하는 조치임.

13) 승강기관리법상 엘리베이터는 월1회 점검토록 되어 있으나, 원격점검장치가 부착된 엘리베이터의 경우 3개월에 1회 점검할 수 있도록 한 원격점검 방식임. 쉽게 말하면 제품이 고장 나면 기술자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보수해 주는 서비스임.

산별중앙교섭 잠정합의안

- ① 금속산업 최저임금으로 통상시급(통상시급은 4,620원과 법정최저임금+90원 중 높은 금액 적용)과 월 통상임금(높은 통상시급 X 227시간) 중 높은 금액 적용
- ② 복수노조시 노사가 합의하는 자율적 교섭방식 준수
- ③ 2년마다 발암물질 조사(노사 공동으로 조사 기관과 방법 결정), 발암물질 교육 연 1회 이상 실시, 발암물질 관련 합의에 대해 사내하청 노동자 동일 적용 노력 등 합의
- ④ 노동시간단축 및 교대제 개선을 위하여 '12.9월까지 금속노사공동위원회와 실노동시간 단축소위원회를 운영

■ 발레오공조코리아

- 사측은 매출감소 등을 이유로 2009년 10월부터 전면 생산 중단하고 청산절차 진행. 2010년 2월 성우철강에 공장설비를 매각하고 2010년 10월 폐업신고를 한 상황임. 노조는 사측이 위장폐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프랑스 대사관 앞 노숙투쟁과 사내천막 농성을 장기간 해 왔음.
- 9월 5일, 노사는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에서 현안문제에 대한 최종합의에 이룸. 지난 8월 30일에 노사는 잠정합의에 도달한 후 9월 1일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합의 함(66.7% 찬성).
- 주요합의사항은 금속노조, 지회 및 조합원들은 그 책임하에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소재 회사 소유 공장건물 등에 대한 일체의 점유를 해제하고 2011년 9월 20일까지 회사에 인도·명도하고, 회사는 점유해제 및 인도·명도 당일 2009년 12월 지급한 법정퇴직금과는 별도의 분쟁해결금을 조합원들에게 각 4,100만 원 지급하기로 함(해당인원 70명).¹⁴⁾ 또한 회사는 노조의 명도 이후 조합원 70명에게 각 28만 원씩 분할 지급하고, 노사가 제기한 진행 중인 일체의 민·형사 소송, 고소·고발, 민원 등 취하·철회하기로 함.
- 대사관 노숙투쟁, 천막농성 등은 9월 20일 전에 모두 마무리하여 정리할 예정으로 알려짐.

■ 한국GM

- 8월 30일부터 31일까지 지부장 선거에서 5개 후보조가 출마함. 1차 투표 결과, 과반수 득표 후보조가 없어 기호 1번조(지부장 민기)와 기호 4번조(지부장 서희택)가 다득표로 결선 투표 진출함.
- 9월 6일부터 7일까지 노조는 지부임원선거 결선투표를 실시함. 민기 후보조(지부장 민기¹⁵⁾·수석부지부장 유승중·부지부장 최판길·사무국장 김용돈)가 55.1%

14) 부당해고 구제신청자 96명 중 26명 희망퇴직 및 특별위로금 지급 현황: ▲'10.9월 18명·'11.1월 3명 각 3,100만 원 ▲'11.3월 3명 각 3,020만 원 ▲'11.5월 2명 각 2,940만 원.

로 당선(임기: '11.10.1~'13.9.30). 이 선거의 투표율은 96.1%였음.

- 주요 공약으로는 ① GM 불평등거래 척결, ② 외주화 철저히 차단, ③ 정규직-사무직-비정규직 단일노조 건설, ④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 ⑤ 상설 노동강도대책위 구성, ⑥ 동종사 임금격차해소 및 각종 수당 현실화, ⑦ 정년연장 등임.

◆ 노동계 동향

○ 민주노총, '2011 국정감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 발표

- 9월 18일, 민주노총은 '2011 국정감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과 대응'이라는 보도 자료를 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정감사에 대한 민주노총의 입장을 밝힘.
- 민주노총은 환경노동위원회가 '반노동정책 철폐'를 위한 총체적 정책 감사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노동정책기조 전면 전환의 필요성을 밝히는 국감'이 되어야 하며, 해고요건 강화, 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고용정책 전환, 노조무력화 정책 중단, 노동안전보건기준의 전면적 상향조정, 노동존중사회 건설을 위한 노동부 역할 강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등 6대 세부의제를 설정. 그러나 민주노총의 제안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금속노조 12개 사업장 현안에 대해서도 발레오만도, KEC, 유성기업, 한진중공업, 대우자판, 시그네틱스, 주연테크, 파카한일유압, 쌍용차, 콜트, 콜텍, 현대차 사내하청 등 금속노조 산하 12개 사업장의 현안이 국감에서 다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힘.
- 롯데그룹 차원의 악덕 노무관리에 대해 "롯데미도파는 노조를 파괴하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전적을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롯데손해보험은 사측의 불성실한 임단협 협상과 단협 개약을 통해 노조를 공격적으로 압박하고 신입직원의 노조가입을 원천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함. 또한 롯데호텔노조와 롯데손해보험 청소노동자노조에 대한 부당한 압박과 공작을 통해 민주노총을 탈퇴시킨 사건을 국감에서 제기할 계획이라고 발표
- 장기투쟁사업장에 대한 비정규직 사업장 현안문제 해결 촉구를 촉구하였음. 특히 재능교육의 부당해고와 노조탄압·노동인권 유린 문제, 최저임금 문제를 둘러싸고 문제가 되고 있는 감시단속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개선의 문제, 비정규직 문제 등도 이번 국감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함.

15) 지부장 약력: ▲1972년 인천 출생, 인천고 졸 ▲1995년 입사, 부평공장 차체부 근무 ▲2000년 해외 매각 반대투쟁으로 수배 ▲2002년 정리해고 반대투쟁으로 구속 ▲대의원 4선.

○ 한국노총, 공공부문 초임삭감에 대한 성명 발표

- 지난 9월 16일, 한국노총은 ‘정부는 끝까지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우롱하려 하는 가’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함. 이날 성명에서 한국노총은 정부가 공공부문 초임 삭감 정책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9월 들어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과 실무간담회를 통해 “삭감된 초임의 현행유지 방침을 철회하고, 총인건비 범위 내에서 초임을 단계적으로 ‘09년 삭감 이전 수준까지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일부 진전된 안을 제시했다고 하였음.
- 그러나 9월 15일 정부는 “기존의 삭감된 초임은 유지하면서 ‘09년 이후 입사자들에게 대해서만 기존직원들의 임금 인상률을 낮추어 2~5년에 걸쳐 보정되도록 한다”고 언론에 발표함. 이에 초임환원에 대한 약속을 어긴 정부에 대한 금융산업노동조합의 총파업을 시작으로 양대노총 공공·금융부문의 총력 투쟁과 전 노동계의 정권퇴진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천명함.

◆ 경영계 동향

○ 당·정의 비정규직 종합 대책에 대한 경영계 입장

- 9월 9일, 경총은 고용노동부의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대해 입장을 발표함. 주요 내용은 “당·정이 제시한 대책은 비정규직 근로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로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규제만을 과도하게 강화하고, 실상 고용의 주체인 기업의 사정과 노동시장의 현실은 전혀 도외시키고 있다”고 주장함.
- 경총은 기업단위의 비정규직 활용 현황을 공개하는 「고용형태 공시제도」는 비정규직 비율로 기업을 평가받게 하려는 것으로서 형평성을 잃은 제도라고 비판하고, 사내하도급업체 근로자의 고용과 근로조건을 원청기업이 직접 책임지라는 것은 시장경제질서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반발함. 또한 불법파견이라는 이유만으로 직접 고용관계를 강제하는 것은 과잉입법으로 위헌적 소지가 있음을 지적하고,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원인인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과보호 문제부터 해소할 것을 촉구함.

◆ 정부, 국회 등 동향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개시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8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 바 있음. 올해 국정감사에서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함. 한진중

공업 문제의 해결이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다시 조남호 회장에 대한 국회출석을 요구한 것임.¹⁶⁾ 10월 7일, 고용노동부 확인감사에서 조남호 회장의 출석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재용 한진중공업 대표·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채길용 노조 한진중공업 노조지회장 등도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계획으로 알려짐.

- 한편, 9월 20일 국정감사에서는 삼성전자 반도체의 백혈병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짐. 특히 “지난달 4일 근로복지공단 소송 관계자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핵심 인사들이 만나 항소와 관련해 합동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다”고 정동영 의원이 주장하면서, 이에 야당 의원들이 근로복지공단 신영철 이사장에 대한 사퇴요구가 이어짐.
- 또한 이날 국정감사에서 홍영표 의원은 장시간 근로시간 개선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주문한 바 있음.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과 초과근로 12시간 등 총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실제 토·일요일 휴일근로는 통계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하면서 주 5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즉각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함.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선 의원, 복수노조 시행 후 신규 노조 상급단체 현황 발표

- 복수노조 시행 후 신규 노조 상급단체 현황(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복수노조 실시 이후 신규로 설립된 430개 노조 중 양대 노총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독립노조가 371개(86.3%)인 것으로 나타남. 이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고용노동부의 자료제출을 받아 밝힌 것임.
- 이러한 상급단체 가입을 하지 않는 경향의 원인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정치투쟁을 하는 기존 노조에 대한 불만과 어용노조 설립이라는 진단을 내놓음. 이에 고용노동부는 기존 상급단체의 정치지향성보다는 실리적으로 근로조건을 변화를 원하는 정서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함.

○ 고용노동부, 비정규직 종합대책 발표

- 9월 9일,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소득양극화, 대·중소기업간 격차 등이 비정규직 문제로 집약되면서 우리 사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지속가능한 공생 발전과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 정규직과 동종·유사한 업무를 하면서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거나 사회안전망 누락 등 근로여건이 취약한 근로자에 중점을 두어 대책을 마련했다고 함. 주요대책

16) 종전과 달리 국감 출석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동행을 명령할 수도 있다고 함.

으로는 사회안전망 및 복지 확충, 차별시정 강화, 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이행 기회 확대,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상생협력의 노사문화 확산 등임.

-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충 대책으로는 “영세사업장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2012년부터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함. 지원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120% 이하인 근로자와 사업주임. 2012년 상반기 2개 지역 준비사업 실시 후 하반기 전면 시행할 예정임.

임금 등 근로조건 차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에게 차별시정 지도·감독 권한을 부여하고, 근로감독관이 차별을 인지한 경우 차별이 일괄 해소되도록 지도하되, 사업주가 불응할 경우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정명령.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임. 한편 차별시정 신청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인 현행제도를 6개월로 확대하기로 함.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대책으로 최저임금 보호 및 단기 고용 남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를 수습기간 설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함. 또한 최저임금법상 도급업체의 연대책임 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하였고, 17)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 사업주가 파견근로자 취업규칙을 작성토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함.

○ 고용노동부, 커피전문점 긴급점검 실시

- 지난 9월 6일, 청년유니온은 주요 커피전문점에 대한 아르바이트생 주휴수당 미지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카페베네 김선권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고소한 바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에 소재하는 7대 메이커(카페베네, 커피빈, 스타벅스, 탐앤탐스, 파스쿠찌, 엔제리너스, 할리스) 직영 또는 가맹 커피전문점에 대한 노동관계법 위반을 긴급 점검하기로 함. 중점 점검사항은 유급주휴, 최저임금, 기타 금품 지급 관련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등임.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토록 하되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등 강력한 대처를 할 예정임. 18) **[K1]**

(김가람, 노동정책분석실 연구원)

17) 최저임금법(제6조):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에게 연대책임 부여, 위반시 처벌규정은 없음.

18) 고용노동부의 이러한 대처에 따라 청년유니온측은 앞서 고소를 취하하였다.